

#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23
----------	------

제출연월일 : 2016. 3. 2.

제 출 자 :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15. 11. 14.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다.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안 제3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 라.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안 제4조)
  -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 그 밖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근거법규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지방재정법」 제17조

## 4. 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자료

-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담당 협의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 라.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해당없음
-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가결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 가결
- 사. 입법예고 : 2015. 12. 21. ~ 2016. 1. 12.(의견 없었음)

##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2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3. 2.(수)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6. 3. 4.(금)
- 위원회심사 : 2016. 3. 11.(금)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15. 11. 14.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안 제3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안 제4조)
  -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 그 밖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 11.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민간단체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